



##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  -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
### 유사한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.
-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수준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낮고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며,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용하여 해당 보증기관의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이 대출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. 반드시 확인하세요!

- 대출 실행 후 당행에 제출한 계약서의 주소지로 즉시 전입 신고하고 대출 기간 중에는 상기 주소지에서 계속 전입을 유지해야 합니다. 만약, 정한 기한 내 전입하지 않거나, 대출 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당행은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고, 기한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 
→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설명서 [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], [9. 기타 유의사항]을 확인하세요.
- 기한연장 시 보증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한연장이 거절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난 후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.
- 기한연장 시 당행은 고객님의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,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  
→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설명서 [4.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], [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]을 확인하세요.
- 대출 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, 당행에서 추가대출 및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.  
→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설명서 [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]을 확인하세요.
- 대출 심사 중 임대차계약을 제출한 이후에는 임대인과 합의를 포함한 모든 사유의 계약서 수정은 불가합니다. 만약, 임대차계약을 수정한 경우 당행은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고, 기한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 
→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설명서 [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], [9. 기타 유의사항]을 확인하세요.

###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-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 
(예 : 1.2억원 1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금리(예시 : 8%)가 적용되어 월 연체이자 80만원(1.2억원 X 8% X 1/12) 발생)
-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설명서 [6.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을 확인하세요.

###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민원·상담은 고객센터(1599-3333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akaobank.com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1. 상품 개요 및 특성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품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출한도 :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용(예상)금리 : 연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출기간 : 취급 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리적용방식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변동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         | 휴일 대출상환 가능 여부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 |
| 중도상환해약금 부과 여부 :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대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체크박스가 있는 구분 항목에 대해서는 가입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, ☒로 표시됩니다.

✓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님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[대출금액과 이자, 수수료 등]을 합산한 총액이며,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정됩니다.

2. 수수료 등 비용부담

- ☐ 중도상환해약금 :  $\text{중도상환대출금액} \times (\quad)\% \times (\text{대출잔여일수} \div \text{대출기간})$   
-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( )개월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
- ☒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
  -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.
  - (예시) 중도상환해약금률 1%, 대출금액 1억원을 대출기간 3년(1,095일/윤년포함 1,096일)으로 약정 후,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가 180일인 경우 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은?

$1 \text{억원} \times 1\% \times 180 / 1,095 \text{ (윤년포함 1,096)} = 164,383 \text{원 (윤년포함 164,233원)}$

- ☐ 인지세 : ( ) 원
- 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| 대출금액            |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0억원 초과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인지세액            | 비과세     | 7만원            | 15만원           | 35만원    |
| <div>고객부담</div> | -       | 3만 5천원         | 7만 5천원         | 17만 5천원 |
| <div>은행부담</div> | -       | 3만 5천원         | 7만 5천원         | 17만 5천원 |

- ☐ 기타수수료 : 항목( ) , 금액( )원, 수수료율 ( )%
- ☐ 기타 비용 : 항목( ) , 금액( )원

-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### 3. 금융소비자의 권리

#### 가. 대출계약 철회권

- 일반금융소비자는 **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 내에**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**모바일앱으로 은행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**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**대출금**과 이에 대한 **이자**, 대출과 관련하여 **은행이 제 3 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**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,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 개월 내에 2 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나. 금리인하요구권

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 여부 : ☐ 대상 ☐ 비대상
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**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소득 상승, 개인신용평점 상승, 부채 감소 등)** 은행에 **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**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 30 조의 2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,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(협약대출·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**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- 은행은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#### 다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 17 조제 3 항 위반)
 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 18 조제 2 항 위반)
 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 19 조제 1 항·제 3 항 위반)
 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 20 조제 1 항 위반)
 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 21 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**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#### 라. 자료열람요구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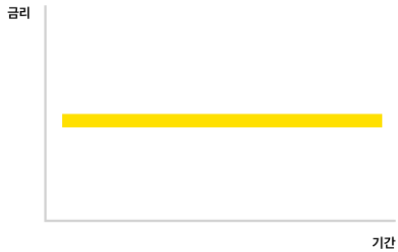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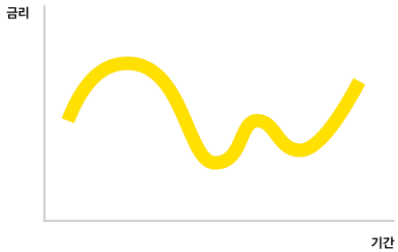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8 일 이내**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**할 수 있습니다.

## 마. 개인신용평가대응권

-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**자동화평가<sup>주)</sup>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**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**정정,삭제,재산출을 요구**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2)를 말합니다.
  - 주)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
-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2 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**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**(서면, 전자우편, 인터넷 홈페이지,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 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)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**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**, 기초정보가 정정·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**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**.
  -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  -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-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  -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 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
#### 4.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

▪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방식,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, 고객님의 신청하신 상품은 [변동금리]방식의 상품입니다.

|      | 고정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동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용형태 |  |  |
| 특징   |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<br>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정주기(3/6/12 개월 등) 마다<br>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<br>대출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점   | 시장금리 상승기에<br>금리 인상이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금리 하락기에는<br>이자 부담 경감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단점   |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<br>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금리 상승기에는<br>이자 부담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▪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(목표마진율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.

| + 가산금리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대출<br>기준금리 | 조달리스크<br>프리미엄 | 유동성<br>프리미엄    | 예상<br>손실율 | 위험자본<br>비용율 | 업무<br>원가율 | 법적<br>비용 | 목표<br>마진율 | 상품자동감면금리,<br>시스템감면금리 등 | = 최종금리 |
| 자금조달금리     |               | + 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+ 마진      | + - 가감조정금리             | = 최종금리 |

-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, 은행은 COFIX, 금융채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가산금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대출 기준금리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.
  - 조달리스크프리미엄 :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 - 유동성프리미엄 :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
  - 예상손실율 : 고객의 신용등급,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
  - 위험자본비용율 :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기회비용 등
  - 업무원가율 :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의 인건비·전산처리비용 등
  - 법적비용 :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및 준조세성 부담금
  - 목표마진율 :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
  - 가감조정금리 : 상품자동감면금리, 시스템감면금리 등

### ※ 변동금리 예시

- 금융채연동금리: KIS 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,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「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 등급 금융채 유통수량(3 개월, 6 개월, 1 년, 5 년)」중가의 단순평균값에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.
- COFIX 연동금리: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매 6 개월마다 변경됩니다.
- 수신금리 연동금리: 예·적금담보대출의 담보 예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예·적금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, 이에 연동되어 변경됩니다.
- 국고채 연동금리: KIS 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,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「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국고채권 유통수량(5 년)」의 단순평균값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변경됩니다.

-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우대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신용등급 변동,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자금조달금리, 원가요소, 마진 및 가감조정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5.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

### ■ 상환방법별 특징

| 원리균등 분할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금균등 분할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만기 일시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“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”</p> <p>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,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.</p> <p>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<u>즉시 분할상환</u>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<u>거치식 분할상환</u> 방식이 있습니다.</p> | <p>“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”</p> <p>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,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</p> <p>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<u>즉시 분할상환</u>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<u>거치식 분할상환</u> 방식이 있습니다.</p> | <p>“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”</p> <p>대출원금을 대출 만기일에 전부 상환하며,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.</p> <p>원리금 상환금액 부담은 가장 적으나, 대출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총 납부해야하는 이자비용이 가장 큼니다.</p> |

-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·이자율·시기

- 고객님의께서 선택하신 상환방법은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입니다.
-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 
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-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 억원을 대출기간 5 년으로 하여 연 5%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)  
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○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| 상환기간 | 원금       | 이자       | 상환금액      | 대출잔액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1 년  | 1,810 만원 | 500 만원   | 2,310 만원  | 8,910 만원 |
| 2 년  | 1,900 만원 | 410 만원   | 2,310 만원  | 6,290 만원 |
| 3 년  | 1,995 만원 | 315 만원   | 2,310 만원  | 4,295 만원 |
| 4 년  | 2,095 만원 | 215 만원   | 2,310 만원  | 2,200 만원 |
| 5 년  | 2,200 만원 | 110 만원   | 2,310 만원  | 0 원      |
| 합계   | 1 억원     | 1,550 만원 | 11,550 만원 | -        |

○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| 상환기간 | 원금       | 이자       | 상환금액      | 대출잔액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1 년  | 2,000 만원 | 500 만원   | 2,500 만원  | 8,000 만원 |
| 2 년  | 2,000 만원 | 400 만원   | 2,400 만원  | 6,000 만원 |
| 3 년  | 2,000 만원 | 300 만원   | 2,300 만원  | 4,000 만원 |
| 4 년  | 2,000 만원 | 200 만원   | 2,200 만원  | 2,000 만원 |
| 5 년  | 2,000 만원 | 100 만원   | 2,100 만원  | 0 원      |
| 합계   | 1 억원     | 1,500 만원 | 11,500 만원 | -        |

○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

| 상환기간 | 원금   | 이자       | 상환금액     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1 년  | 0 원  | 500 만원   | 500 만원    | 1 억원 |
| 2 년  | 0 원  | 500 만원   | 500 만원    | 1 억원 |
| 3 년  | 0 원  | 500 만원   | 500 만원    | 1 억원 |
| 4 년  | 0 원  | 500 만원   | 500 만원    | 1 억원 |
| 5 년  | 1 억원 | 500 만원   | 10,500 만원 | 0 원  |
| 합계   | 1 억원 | 2,500 만원 | 12,500 만원 | -    |

■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

-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■ 이자 납입방법.

- ☒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하며, 대출계약 시 지정한 자동이체계좌에 납입일까지 이자를 입금하거나, 모바일 앱을 통해 휴일에 상관없이 직접 상환거래 가능
-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## 6.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### 가.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부담

- 연체금리는 [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]로 적용합니다.

- 연체가산금리 : 연 3%
- 연체금리는 **최고 연 15%**로 합니다. 단, 대출금리가 연 15%보다 높을 때에는 대출금리에 연 2%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.
- 상품에 따라 연체금리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#### ①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, 1 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내셔야 합니다.

#### ②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내셔야 합니다.

#### ③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2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내셔야 합니다.

####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

※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중 발췌)

-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
-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(제 1 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)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
-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
-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
-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
-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
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-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금리가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 잔액에 연체금리가 적용됨**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그 밖의 불이익

- 대출 원리금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 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원리금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 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 -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 년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 - 약정한 대출의 기한이 도래하면 만기일까지 전액상환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대출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, **만기 도래 30 일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 연장 신청 시,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
  - 신용점수 하락, 연체 및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(감액)해야 하거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, 만기일까지 대출 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.
  - 대출 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, 당행에서 추가대출 및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.

## 8.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·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9. 기타 유의사항

-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[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)]

-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,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
- 대출거래추가약정서에서 약정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-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 (보증기관에서 정한 예외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)
-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
  - ☞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.

- 기한의 이익이란?
  -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.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?
  -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즉시 상환
  - 연체이자 부담
  -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

-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-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만 부여됩니다.
-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 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대출만기 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당행으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고객님의 직접 수령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.

-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

-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대상 상품 여부 : ☐ 대상 ☒ 비대상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, 유선 상담을 통해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- ☞ (변경전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상환 → (변경후)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로 상환
  - ☞ 서울보증보험 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 또는 담보대출 등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- ☞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, 유선상담을 통해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, 접수 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.



■ 채무조정요청권

- 채무조정요청권 대상 상품 여부 : ☐ 대상 ☒ 비대상
  - 채무자는 실직, 폐업,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,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-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,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 
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 또는 담보대출 등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은행은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-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,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. . . (서명)

본 상품은 카카오뱅크 담보여신캠프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599-3333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kakaobank.com](http://www.kakaobank.com)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[www.fcsc.kr](http://www.fcsc.kr)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